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의안 번호	12474
----------	-------

제출연월일 : 2025. 8. 28.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 및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범위(안 제2조제1호)

종전의 현충시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기념시설 및 국가수호기념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규정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2)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안 제7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안 제8조)

- 1) 국내의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보훈기념시설을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및 관리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훈기념시설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기념시설이 적절하게 보존·관리되도록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기념시설”이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이하 “유공자”라 한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구역·장소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립운동기념시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국가수호기념시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는 제외한다)의 국가수호와 관련된 희생·공훈 및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민주화운동기념시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공무수행기념시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제외한다)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희생·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외 보훈기념시설”이란 유공자를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외의 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지정과 보존·관리·활용(이하 “보존등”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보존기념시설의 건립 및 보존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존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지정 해제 및 보존등과 국외 보존기념시설의 건립 및 보존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존기념시설 및 국외 보존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지정 및 보존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존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존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존기념시설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외 보존기념시설의 실태조사, 건립 및 보존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기념시설 및 국외 보존기념시설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존기념시설 및 국외 보존기념시설의 효율적

인 건립, 지정 및 보존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기념시설 건립 및 보존등에 관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의 희생이나 공헌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보훈기념시설을 직접 건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제8조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국내의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보훈기념시설을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2. 해당 유공자의 희생이나 공헌 정도
3. 해당 시설등의 보존 상태
4. 해당 시설등의 활용 실태 및 향후 관리계획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보훈기념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보훈기념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보훈기념시설 관리자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를 그 국가보훈기념시설의 관리자(이

하 “보훈기념시설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국가보훈기념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보훈기념시설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지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보훈기념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관리 및 주변 정비
2. 국가보훈기념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3. 국가보훈기념시설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
4.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등에 관한 기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등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훈기념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사망, 거주지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훈기념시설관리자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⑤ 보훈기념시설관리자는 해당 국가보훈기념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보훈기념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상훈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경우
2. 관련 유공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훈기념시설관리자 또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국가보훈기념시설이 훼손·멸실되어 원형 복원이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국가보훈기념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국가보훈기념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훈기념시설관리자
2.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제1호의 보훈기념시설관리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보훈기념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정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해제 사실을 해당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훈기념시설 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지정 및 지정 해제의 고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지정 해제는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및 관리) ① 누구든지 국가보훈기념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이진으로 국가보훈기념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훈기념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

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보훈기념시설관리자가 해당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보훈기념시설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국가보훈기념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보존이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을 이전하려는 보훈기념시설관리자는 이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이 훼손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등 보존 또는 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기념시설관리자에게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기념시설관리자(국가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국가보훈기념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등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보존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보존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 보훈기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주변 정비
2. 국외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3. 국외 보훈기념시설 활용 사업의 운영
4. 그 밖에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보존등에 필요한 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개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국가보훈기념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 또는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원 및 보존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현황, 관리 상태 및 보수 필요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가보훈기념시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 또는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보존등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념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가보훈기념시설 또는 국외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기념시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

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또는 보훈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기념관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가보훈기념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기념시설 건립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되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되었거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독립운동기념시설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수호기념시설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훈기념시설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관리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훈기념시설관리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기념시설(이하 “보훈기념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및 보존·관리·활용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보훈기념시설의 건립·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기념시설을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2(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제82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에 관한 업무 수행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조(정의)	기존 현충시설(독립, 호국)에 민주화운동과 공무수행 관련 기념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
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지정 및 보존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3	제7조(보훈기념시설의 건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훈기념시설을 직접 건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자가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4	제8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신청을 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5	제10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해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를 할 경우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6	제12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및 관리)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7	제13조(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등에 대한 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8	제14조(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보존 등)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개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9	제15조(국가보훈기념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 또는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원 및 보존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10	제16조(국가보훈기념시설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국가보훈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 또는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82호)」,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107호)」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안 제7조),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안 제8조, 제10조, 제12조), 현충시설의 보존 및 관리(안 제12조, 제13조),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안 제14조), 실태조사(안 제15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6조)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의 2025년 예산 자료에 따르면, 현충시설관리 69억4,400만원, 현충시설 건립에 47억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이 중 현충시설관리에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 1,325만원, 현충시설 관리 및 활성화 지원 26억5,600만원, 국외 현충시설 보존 및 관리 40억7,500만원, 실태조사 7,600만원, 현충시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제정안의 정의(제2조)에 따른 보훈기념시설 범위 중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은 현행 현충시설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수행기념시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수호 시설로 지정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로 구분한 것임
 - 다만, 제정안에 따라 보훈기념시설에 포함될 민주화운동시설의 경우 건립 및 관리 등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그 규모를 기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제정안은 보훈기념시설 기본계획(제5조)에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등을 위한 기본방향, 평가,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이 국가보훈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제정안에서 규정한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국가보훈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 중 사업 규모 등의 확대,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의 수행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기존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규모, 신규 사업의 규모 등을 기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김현우	강경선	이운심	나치만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경선	044-202-5571	na0914@korea.kr